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3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이해식 · 손 솔
김한규 · 김동아 · 임호선
권칠승 · 서영교 · 김기표
최민희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, 공소청 소속 검사(이하 “검사”라 한다)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.

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특히 송치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, 다만 그 경우 의견진술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,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 신설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7조의2(검사에 대한 의견진술)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위에 있는 사람(이하 “의견진술인”이라 한다)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(이하 “의견진술을 위한 면담”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고소인·고발인·피해자·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를 포함한다)

2. 피의자의 변호인

3. 고소인·고발인·피해자의 대리인

② 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통지에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의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의견진술인의 신청에 따라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,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인에게

변경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의견진술인은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 시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④ 의견진술인이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에서 사건에 관련한 물건에 대한 제출 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,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물건에 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검사는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이 종료한 후 그 일시, 장소, 대상자 및 의견진술의 요지 등을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.

제254조의2(검사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) 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2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에게 송치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②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에게 송치되어 있거나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47조의2(검사에 대한 의견진술)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위에 있는 사람(이하 “의견진술인”이라 한다)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(이하 “의견진술을 위한 면담”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 <u>1. 고소인 · 고발인 · 피해자 ·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· 직계친족 ·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</u> <u>2. 피의자의 변호인</u> <u>3. 고소인 · 고발인 · 피해자의 대리인</u>

② 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통지에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의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의견진술인의 신청에 따라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,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인에게 변경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의견진술인은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 시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④ 의견진술인이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에서 사건에 관련된 물건에 대한 제출 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,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물건에 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검사는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이 종료한 후 그 일시, 장소,

<신 설>

대상자 및 의견진술의 요지 등을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.

제254조의2(검사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) 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